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704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6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II. 제안이유

-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효 완성 상품권 환불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선불 충전금 계좌 이자 세입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명시 및 환불 절차 명시(안 제4조의3, 부칙 제1조)
- 나. 선불충전금 계좌 발생 이자 세입 근거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6. 4. 9. ~ 4. 29.)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소멸시효 완성 시 사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충전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서울시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임.

2. 개정안의 입법 배경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2019년 12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사랑상품권 조례”)에 따라 2020년도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자치구의 상품권 발행·유통을 지원하고 있음.

< 연도별 서울시상품권 및 자치구상품권 발행·유통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총 발행액 ㉠	총 판매액 ㉡	판매율 ㉡/㉠	총 결제액 ㉢	결제율 ㉢/㉡
합계	서울시상품권	7,141	6,774	94.9	6,412	94.6
	자치구상품권	57,622	53,376	92.6	51,624	96.7
2020~2021	서울시상품권	1,125	1,040	92.5	1,032	99.2
	자치구상품권	20,183	18,298	90.7	18,036	98.6
2022	서울시상품권	2,000	1,882	94.1	1,829	97.2
	자치구상품권	11,346	11,188	98.6	10,965	98.0
2023	서울시상품권	867	759	87.5	710	93.5
	자치구상품권	9,804	9,427	96.2	9,097	96.5
2024	서울시상품권	1,590	1,538	96.7	1,432	93.1
	자치구상품권	8,427	6,703	79.5	6,488	96.8
2025	서울시상품권	1,559	1,556	99.8	1,409	90.6
	자치구상품권	7,862	7,760	98.7	7,038	96.7

※ 소관부서(소상공인정책과)에 따르면 서울페이 플랫폼 도입(2022년도) 이전인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차수별 자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연도의 발행액·판매액·결제액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6년간 서울시가 발행한 상품권(이하 “서울시상품권”)은 총 7,141억원 규모이며, 이 중 6,774억원이 판매되어 6,412억원이 결제에 사용되었고, 자치구가 발행한 상품권(이하 “자치구상품권”)은 총 5조 7,622억원 규모이며, 이 중 5조 3,376억원이 판매되어 5조 1,624억원이 결제에 사용되었음.
- 서울시상품권과 자치구상품권은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서울시와 자치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그 발행·유통구조를 살펴보면 2022년도부터 서울페이 앱을 통해 모바일 전자상품권 형태로 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으며, 상품권 사용자는 액면가액의 5~10% 내외의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서울시 관내 가맹점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음.
- 그리고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입할 때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서울시상품권의 경우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상품권은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할인보전금과 함께 발행기관(서울시 또는 자치구) 명의의 집금계좌에 예치되었다가, 상품권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해당 금액이 가맹점 계좌로 정산되는 구조임.
- 한편 「상법」 제64조¹⁾가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부터 발행한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202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상품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음.²⁾
-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 대한 환불은 서울시의 권리를 포기하

1)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소관부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이후 총 1,144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었음.

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지방자치법」³⁾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소관부서(소상공인정책과)가 받은 법률자문 결과 역시 권리포기 또는 새로운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음.

- 이에 서울시는 시효만료 상품권의 처리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온누리상품권의 사례,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⁵⁾ 등을 검토하고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는 “서울상품권 조례”를 개정하여 ▶계좌정보가 있는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후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불하고, ▶계좌정보가 없는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시효 완성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후에도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세입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⁶⁾
- 그리고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음.⁷⁾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개별적인 권리포기 또는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환불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문제이므로, 조례를 통해 환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임.

3)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4) 온누리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을 구분하여, ▶지류상품권은 시효 만료 후 무기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시효 만료 후 무기한 환불을 허용하고 있음.

5) 자동환불 되도록 하거나(세종), 무기한 연장 사용을 허용하거나(부산, 인천, 강원 등), 곧바로 세입조치(군산)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효만료 상품권에 대한 처리기준이 다양함.

6) 2026년 3월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시에는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26년 5월 시의회에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에는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한 날(공고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7)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3822 (2026. 3. 23.)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참고로 법제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해 조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서울시는 2026년 3월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한 후 4월에는 자치구도 자치구상품권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⁸⁾ ▶관계부서 사전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음.

< 동 개정조례안의 제출 경위 >

- 관련부서 협의(2026. 3.~4.)
 -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 규제대상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제출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대상
 -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6. 4. 9. ~ 4. 29.) : 의견 없음
- 법제심사(2026. 5. 8.) : 일부 자구 수정
- 조례·규칙심의회(2026. 5. 13.) : 원안가결
- 시의회 제출(2026. 5. 26.)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환불할 경우 2025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1천 9백만원과 2026년 3월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된 1천 4백만원을 포함하여 3천 3백만원의 순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이후의 수입 감소규모는 상품권 사용자의 사용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어 추계가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8)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5369 (2026. 4. 24.)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개정 협조 요청”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할인보전금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관련(안 제2조제5호/안 제4조제3항/안 제20조)

- 안 제2조제5호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할인보전금’으로 정의하고, ▶ “서울특별시”를 “시”로 약칭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할인보전금</u> ”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 <u>시</u> ”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생략)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시</u> -----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u>할인액</u> 등 부당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2. (생략)	제20조(환수 조치) ----- ----- <u>할인보전금</u> ----- -----. 1.·2. (현행과 같음)

- 그리고 안 제4조제3항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⁹⁾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¹⁰⁾에 따라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서울특별시”를 “시”로 약칭하였으므로, 이후의 조문인 제4조제3항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시”로 약칭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약칭된 표현인 “시”를 사용한 것임.

9)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5. 12), p.799

10)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8.), p.85, p.413

- 안 제20조는 현행 “서울상품권 조례”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할인액”을 안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용어인 “할인보전금”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나. 이자의 서울시 귀속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3항)

- 안 제4조의2제3항은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② (생략) <신설>	제4조의2(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¹¹⁾에는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차년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안 제4조의2제3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관련(안 제4조의3/안 부칙 제2조)

- 안 제4조의3제1항은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64조¹²⁾가 5년의 소멸시효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개정조례안은 상품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11)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2025. 9), p.5

12)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있는바, 이에 대해 소관부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구매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효 완성시점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 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국가 및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 안 제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구매일로부터 5년)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본인부담금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사용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는 상품권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나, 서울시를 상대로 채권을 소지한 자들 중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¹³⁾ 소멸시효(구매일로부터 5년)가 완성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상품권 구매비용을 그대로 환급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상품권 사용이 위축되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대해 소관부서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구매비용을 환급하는 것은 수익적인 행정행위이므로 집행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의 재량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사안인지, 또 다른 논란과 부작용을 제기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4조의3제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본인 부담금을 ‘소멸시효 완성 후’ 환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시효완성 상품권에 대한 환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개정조례안을 의결한다고 할지라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¹⁴⁾에 따라 문장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의3제4항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

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2025. 9), p.1

○ (목적)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

1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5. 12.), p.120

제1절 문장 정비의 원칙

○ 간결한 문장 쓰기

- 중복되는 표현, 당연한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품권의 본인부담금은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의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¹⁵⁾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¹⁶⁾에서는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간결하고 통일성 있는 한 문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항을 나누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안 제4조의3제4항은 ‘본인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과 ‘할인보전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1개의 항에서 한꺼번에 규정함으로써 간결성과 통일성이 일부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안 제4조의3 제4항을 구분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환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제4항에서 규정하되, 당초부터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보전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제5항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안 제4조의3제4항은 ‘할인보전금의 귀속’에 대해 당초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국가 및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시의 조례를 통해 국가의 재무행정(할인보전금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계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¹⁷⁾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법」 저촉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할인보전금이 국가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서울시의 세입 귀속에 관

15)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8.), p.423

16)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5. 12.), p.120, p.135

17)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한 내용만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안 제4조의3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잔액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업무처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나, 제2항과 제4항은 문장의 주어가 잘 드러나지 않아¹⁸⁾ 누가 환급 및 세입 귀속업무를 수행하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는바, 처리주체를 시장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 의견(안 제4조의3 관련) >

개정안	수정안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 한다)을 사용자의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및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 ----- 본인부담금을 ----- 귀속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시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환급 등에 관한 개

18)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는 어법에 따라 주어, 목적어 등 필요한 문장성분을 갖추어 쓰되, 문장의 주어가 잘 드러나게 쓰도록 명시하고 있음.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025. 12.), p.120

정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이익이 증진된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¹⁹⁾

안 부칙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라. 그밖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조직개편 사항 반영 등

(안 제8조제5항/안 제11조/안 제13조제2항/안 제13조제3항/안 제16조제3항/안 제20조)

- 안 제8조제5항은 법률 제명을 정확히 인용하기 위해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며, 안 제11조²⁰⁾와 안 제13조제2항도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 ④ (생략)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u>개인정보보호법</u> 」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개인정보 보호법</u> 」 ----- -.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자치구를 지원을 할 때에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8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이용 등을 조건으로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 ----- 제9조제3항----- -----

19)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8.), p.19~20

라. 자치법규의 시간적 효력

- 즉 자치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법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치법규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부칙 등에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0) 안 제11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와 항의 번호를 붙여 쓴 사안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025. 12.), p.106 참조.

현행	개정안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4. (생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 중 -----. ③ ----- <u>소상공인정책과장</u>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 -----.
제1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u>관련 조례</u>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수당) ----- -----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

- 안 제13조제3항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6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²¹⁾에 따라 종전에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던 ‘소상공인담당관’이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의 규정내용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안임.
- 안 제16조제3항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지방서기관, 4급)에서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5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서울상품권 조례”가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을 제13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면서 제16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로 규정함에 따라, 동일인이 위원회의 위원이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기도 한 모순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 안 제18조는 현행 “서울상품권 조례”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21) 서울특별시 규칙 제4641호 (2024. 6. 28. 일부개정, 2024. 7. 1. 시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수당과 여비의 지급 범위 및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규정내용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입법조사관	연락처
강 민 수	02-2180-8062